

국가하천(낙동강) 낚시·야영·취사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(안)

경상남도 창녕군 국가하천(낙동강)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“낚시·야영·취사 등의 금지지역”으로 지정함에 있어 이용객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02월 18일

창녕군



1. 지정목적

- 국가하천(낙동강)을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 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

| 하천명 | 등급 | 위 치 | | 연 장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낙동강 | 국가 하천 | 남지 체육공원 | 창녕낙동강교~용산전망대 (남지읍 남지리 961 ~ 남지읍 용산리 671) | 6.0km |
| | | 학포수변 생태공원 | 본포교 상류 (부곡면 학포리 402-2 ~ 부곡면 학포리 477-4) | 0.7km |

나. 낚시 등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

○ 낚시·야영·취사행위 금지기간 : 연중

○ 금지행위

-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

- 떡밥·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

※ 적용예외사항 : 학술조사 어종조사 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

3.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| 근거 법령 | 벌칙 |
|--------------|--|
| 하천법 제46조 제6호 | 「하천법」 제9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) 1차 위반 100만원 2) 2차 위반 200만원 3) 3차 위반 300만원 |

4. 금지지역 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

○ 창녕군 안전치수과 현장순찰자가 매주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처리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

6. 의견 제출

가. 제출기간 : 2021. 02. 18. ~ 3. 9.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
연락전화번호,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라. 제출기관 : 창녕군청 안전치수과

• 주 소 : 경상남도 창녕군 군청길 1 창녕군청 안전치수과

• 팩 스 : ☎055-530-1863(팩스 : 055-530-1810)

7. 기타사항

가.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나. 공청회개최 계획 : 없음

다. 위치도 붙임. 끝.

7. 위치도

1) 남지체육공원(창녕낙동강교~용산전망대, L=6.0km)



2) 학포수변생태공원(본포교 상류, L=0.7km)

